

## 입시관리위원회규정

제 정	1995.	3.
개 정	1998.	9.
개 정	2007.	9.
개 정	2010.	9.
개 정	2012.	3.
개 정	2016.	7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15조에 의거 입시전형 및 홍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입시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구성 및 임무)** ①위원회는 교무위원 및 각 학부(과)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며,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또한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집행한다.

**제3조 (임기)**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한 후임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4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 관리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
2. 입학전형 중 중요한 관리업무 계획 및 진행에 관한 사항
3. 입학전형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
4. 입학사정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
5. 입시홍보 기획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
6. 기타 입시전형 관리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

**제5조 (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
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③회의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6조 (위원회의 사무)** 위원회의 사무는 입학처에서 관장한다.

**제7조 (기타)**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의 특례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